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에 대한 면책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한 증명 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포함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함(안 제61조제1항 단서 및 제8항).
-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공개함(안 제62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II. 검토의견

개정안 제61조제1항 단서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등에 대한 면책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의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증명 외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를 추가하고 있는데, 현행 제61조제1항 본문의 각 호1)에 해당하는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1)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이하 "피해구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2. 위탁수화물의 분실·파손
3. 항공권 초과 판매
4.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시행일 전후로 발생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피해구제 책임을 정함에 있어 구법의 요건을 적용할 것인지, 강화된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피해구제 면책요건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안 제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안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음.

<안 부칙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구제의 이행에 대해서는 제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5. 탑승위치,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6. 그 밖에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